

# PL立法과 企業에서의 對策

李 源 善\* 譯

이 자료는 日本의 同和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火災新種事業部 新種그룹 課長代理 藤田一裕氏が「日本 고무協會誌」1994년 9월호에「PL立法と企業のとるべき對策」이라는 標題로 기고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譯者註〉

## 1. 머릿말

### 1.1 PL法 立法化의 背景

PL이란 英美法에서 말하는 “Product Liability”의 머릿글자를 딴 略語로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製造物責任」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제품(缺陷製品)으로 인하여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원래 이 PL은 英美法の 不法行爲法중의 한 분야로서 발전해 온 概念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에 社會적인 문제가 되었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에 걸쳐 잇따라 일어난 森永 드라이밀크 사건을 비롯한 4건의 대형 피해 사건이며, 당시에는 이와같은 사건과 함께 PL에 대한 社會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無過失責任을 전제로 한 PL法(製造物責任法)의 導入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후 歐美를 시작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L法이 계속 정비되어 시행되고

〈표 1〉 세계 각국의 PL법 입법화 현황

국 가	입 법 화 현 황
미 국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엄격한 책임이론을 인정하였다. 1985년에 EC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EC 가맹국 10개국이 PL法을
유 럽	시행하였다. EFTA국가들도 EC규정과 같은 PL法을 시행하였다.
아 시 아 · 태평양지역	1993년 필리핀 및 호주에서 PL法 제정. 1994년 중국에서 PL法 제정.

\* 大韓타이어工業協會 常勤理事

있으나(표 1 참조), 일본의 PL法 立法化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에 걸쳐 발생한 제품에 의한 피해는 和解나 企業에 의한 피해자구제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PL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PL法 導入에 대한 產業界와 消費者側의 意見이 엇갈려 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 聯立政權이 탄생한 이후 產業界側이 PL制度 導入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 등도 요인이 되어 일본에서도 PL法을 導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93년 12월에는 第14次國民生活審議會(總理大臣 諮問機關)가 관련 各省 및 廳의 意見을 수렴하여 PL法 導入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總理大臣에게 제출하였으며, 1994년 4월 12일에는 政府가 PL法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22일에 PL法이 立法化되었다.

## 1.2 PL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PL法이 導入된다면 클레임件數나 제품원가 등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L法의 立法化 움직임에 호응하여 各企業 및 業種團體 등에서 PL法의 研究, 社內組織強化의 檢討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各企業의 PL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PL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 企業이 얼마나 있는지

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PL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일부 企業을 제외하고는 많은 企業들이 PL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하여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PL에 대한 문제는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經營課題의 하나로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단지 企業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의 회피라는 관점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와의 협조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요시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물론 PL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판매처, 판매방법 등에 따라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취해야 할 PL대책」의 목표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PL의 기본개념 및 기업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PL에 대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座標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PL法의 基本概念

### 2.1 過失責任에서 缺陷責任으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PL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기업 등에 대하여 전혀 책임추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약 150건의 PL에 대한 判例가 있다.

과거의 법률을 근거로 PL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몇가지 根據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被害者와 企業 등의 계약관계의 유무」나 「제품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民法 第709條(一般不法行爲責任)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民法 第709條는 「故意 또는 過失」을 責任要件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PL에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缺陷製品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가 그 缺陷製品을 製造한 기업에 대하여 民法 第709條에 의거 책임추구를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는 기업이 缺陷製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故意 또는 過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現代의 製品은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의 생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사용자가 기업측의 설계상의 과실, 제조공정상의 과실 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 立法化된 PL法에서는 「故意 또는 過失」로 개정하여 「缺陷」을 責任要件으로 하고 있다. 「缺陷」은 단순한 「物의 性狀」이기 때문에 그 「缺陷」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업 등에 관심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위험성을 회피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기업측으로서는 안전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설계·제조·판매 등의 단계에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

더라도 결과적으로 제품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이 「缺陷」으로 인정되면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새로운 PL法은 과거의 「過失責任」에서 「無過失責任」 또는 「缺陷責任」으로 移行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sup>1)</sup>할 수 있을 것이다.

## 2.2 缺陷의 認定基準

### 2.2.1 缺陷의 定義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PL法에서는 「缺陷」이 責任要件으로 되었기 때문에 「缺陷」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PL法 제2조 제2항에는 「缺陷」이란 「當該製造物의 特性,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용 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제조물에 관계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는 법률상 明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 法律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多種多様하여 제품의 사고형태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缺陷」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여, 이와같은 매우 추상적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實務적으로는 사건마다 재판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추상적인 정의는 企業側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기업이 PL 대책으로서 「缺陷」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제조·판매단계

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여도 중요한 「缺陷」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도 결함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대하여 완전한지의 여부는 아무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2.2 缺陷의 判斷

결함의 인정은 법해석의 문제이며, 判例를 축적하지 않으면 그 결함인정의 방향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標準逸脫基準

제품이 통상적인 상태에서 逸脫해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결함제품과 회사의 設計仕様 또는 性能基準에 따라 제조한 표준제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결함을 立證한다<sup>3)</sup>. 그러나 표준제품 자체가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sup>4)</sup>.

다만 많이 출하되어 있는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과 비교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제품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결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消費者期待基準

제품은 그 성질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입할 때 기대하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며<sup>5)</sup>, 이 제품이 통상적인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缺陷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C 규정에서도 第6條에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The safety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expect)」이 결여된 경

우를 결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란 「一般人」이 당연하게 기대하는 안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者期待基準의 사고방식과 거의 같은 사고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PL法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規定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과거에는 있었으며, 실제로 1993년 12월 總理大臣에게 제출한 第14次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報告 「製造物責任制度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消費者 被害防止·救濟」(이하 「國生審報告」로 약칭)에서도 「缺陷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主體에 대해서는 製造者와 消費者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구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通常人』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PL法에서는 누구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법률상 明記되어 있지 않아 결국 개별적인 경우와 같이 재판관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재판관이 「通常人」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히 허용되고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缺陷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企業側의 이론으로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더라도 「缺陷」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企業側도 제품의 전문가, 기술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通常人의 입장에서 서서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危險效用基準

製造物이 함께 갖고 있는 위험성과 유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유용성을 초과하는 경우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 위험성과 유용성으로서 웨드 교수는 다음 7가지를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 ①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 ②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의 정도
- ③ 동일목적에 적합한 안전한 대체제품의 가능성
- ④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가능성
- ⑤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가능성
- ⑥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⑦ 제조자에 의한 손실분배의 가능성

단, 앞에서 설명한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은 별개로 독립된 판단기준이 아니라, 소비자기대기준은 통상인으로서 가치판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위험효용기준은 그 판단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다<sup>6)</sup>.

國民生活審議會 보고에서는 위험효용기준적인 판단요소를 받아들여 결함을 판단할 때의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는 웨드 교수가 열거한 판단요소 이외에 예를 들면 「價格對 效果」나 「製品의 通常使用期間·耐用年數」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열거하였다. 이 國民生活審議會報告와 같이 판단요소를 보다 많이 열거하여 缺陷概念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다면 企業側으로서도 구체적인 제품의 결함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함의 판단요소를 구체화하면 할수록 결함의 해석이 경직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충분히 구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PL法에 있어서는 결함의 판단요소에 대하여는 「當該製造物의 特性,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使用形態, 製造業者 등

이 當該製造物을 인도한 시기, 기타 當該製造物에 관련된 事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裁判時에는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보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自社製品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缺陷」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2.3 缺陷의 判斷時期

결함의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出荷時說」과 「事故時說」이 있다.

出荷時說이란 제품이 출하된 시점(유통되는 시점)에서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消費者期待基準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제품이 출하된 시점에서의’ 通常人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한편 「事故時說」은 사고발생시점에서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出荷時說과 같이 消費者期待基準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通常人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상 두가지 사항의 차이는 出荷時부터 事故發生時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耐久消費財나 醫藥品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출하시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몇년동안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기술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어서 소비자를 포함한 通常人의 타이어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도 이 기술향상과 함께 향상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出荷時說에서 보면 출하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안전성

이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던 것도 事故時說에서 보면 출하시보다 더욱더 향상된 사고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通常人이 인정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事故時說을 채용하면 출하당시에 企業側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缺陷」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몇년후에는 「缺陷」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事故時說을 채용한다면 企業側으로서는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PL法에서는 결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판단요소의 하나로서 「當該製造物을 인도한 시기」를 열거함으로써 이와같은 점에서의 配慮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같은 해석이 확일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企業側에서는 製品을 출하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소비자가 요구 및 기대하는 안전성을 배려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2.3 PL法의 位置

PL法 제6조에서 PL法은 不法行爲責任이나 債務不履行責任이라는 종래의 民法規定에 의거하여 메이커 등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併存關係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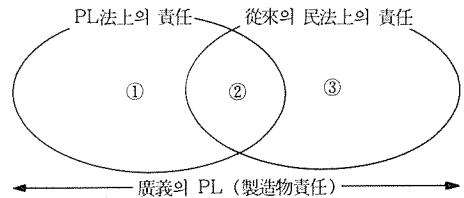
PL法에 의거한 責任과 종래의 民法에 의거한 責任은 동일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그림 1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넓은 의미의 PL에 대한 法的責任 전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PL法 이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責任을 짐으로써 얻게 되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事例를 고려할 수 있다.

#### 2.3.1 缺陷없는 過失

出荷時說에 의거하여 缺陷을 판단한다면 出荷한 時點에서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安全性을 충족시킨 「缺陷이 없는 製品」을 출하하면 PL法에 의거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PL法에 의거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메이커 등은 일체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메이커는 제품을 유통시킨 후에도 그 安定性에 대하여 계속 감시하여야 할 의무(商品監視義務)를 갖고



- ① PL法에 의해서만 책임추궁이 가능한 부분
- ② PL法 및 종래의 民法에 의해서도 책임추궁이 가능한 부분
- ③ 종래의 民法에 의해서만 책임추궁이 가능한 부분

[그림 1] PL法과 종래의 民法과의 관계

있다. 예를 들면 출하후에 판명된 위험성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리콜(recall) 등의 안전대책조치를 대만히 한 경우에는 過失로 인정되어 民法 제709조(一般不法行爲責任)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가능성이 있다.

#### 2.3.2 販賣業者等の 責任

PL法에서 責任을 부담하게 되는 責任主體중에는 실제로 판매업자, 설치업자, 수리

업자, 리스업자, 운송업자, 포장업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를 들면 판매업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거나에 관계없이 이것을 판매한 경우나 포장업자의 포장작업중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에 위험성이 가해진 경우 등에는 당연히 民法 제709조(一般不法行爲責任)나 民法 제415조(債務不履行責任) 등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가능성이 있다.

### 2.3.3 不動產의 缺陷

PL法의 대상이 되는 製造物은 제2조에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產」이라고 定義되어 있다. 따라서 未加工農產物, 電氣 등의 無形 에너지, 不動產 등은 PL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缺陷不動產에 의한 被害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나 부동산판매업자는 어떠한 責任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民法 제415조(債務不履行責任), 民法 제450조(瑕疵擔保責任), 民法 제709조(一般不法行爲責任) 등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가능성이 있다.

### 2.3.4 製品自體의 損害

PL法 제3조는 缺陷製品에 의한 損害가 當該缺陷製品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의 規定을 넣고 있다. 이러한 損害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직접 매매계약관계가 있는 판매업자 등은 民法 제415조(債務不履行責任) 또는 民法 제450조(瑕疵擔保責任)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접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메이커에서도 民法 제709조(一般不法行爲責任)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가능성이 있다.

### 2.3.5 責任期間의 經過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物質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즉, 의약품 등에 의한 건강피해 등)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PL法 제5조는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자 등이 當該製造物을 인도한 때부터 10년까지는 時効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不法行爲法의 原則(民法 제724조)에서의 長期時効는 不法行爲時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L法의 時効가 성립된 후에도 10년간은 民法 제709조(一般不法行爲責任)에 의거하여 責任을 질 가능성이 있다.

## 3. 製品安全對策

### 3.1 PL對策으로서의 缺陷發生防止對策

「缺陷」이 責任要件인 PL法에 있어서는 「缺陷」製品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責任을 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缺陷」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過失責任에 있어서도 責任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企業의 PL대책중에서 缺陷發生防止對策은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缺陷發生防止라는 관점에서 PL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PL대책에 있어서 기업이 취하여야 할 근본적인 자세는 法的責任을 회피함으로써 단지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고 제품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능한 한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용방법을 크게 벗어나 잘못사용(예를 들면 음주운전 등 소비자의 違法使用)

하는 등 소비자측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까지 메이커측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와같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企業이 하여야 할 PL對策의 범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法的責任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구축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러한 관점에서 缺陷防止對策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缺陷發生防止對策」이 아니고, 모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製品安全對策」이 企業이 취하여야 할 方向임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3.2 製造上の 缺陷排除

「製造上の 缺陷」이란 제조공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어느 특정제품에 제조자가 의도하고 있는 仕様과 다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다른 仕様에 따라 제조된 同種의 제품에 비하여 위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sup>7)</sup>, 대부분의 경우 上記 標準 逸脫基準에 의거하여 「缺陷」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製造上の 缺陷」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저하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미 많은 기업에 정착되어 있는 QC(Quality Control; 品質管理)나 QA(Quality Assurance; 品質保證) 방법을 응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QC, QA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製品安全對策의 주안점은 「PL事故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그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조공정상 일정한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필연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저하가 發注者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仕様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다고 하는 「品質基準」이 아니라 비록 품질이 저하하였더라도 通常人이 기대하는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에 들어가도록 배려한 「安全基準」으로 고치고, 현행 QC, QA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3 設計段階에서의 配慮

제품의 특성은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의 배려는 缺陷 製品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반대로 만약 설계단계에서 「缺陷」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설계로 만든 모든 제품에도 결함이 생겨 결함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 등을 포함하여 企業으로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의 배려는 經營政策上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설계단계에서 결함을 배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缺陷」자체의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상태, 즉 안전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안전성을 배려하여야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 3.3.1 제1단계(法定 安全基準 明確化)

法令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缺陷」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法令에 정해진 기준은 최저한도의 기준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명확하게 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 3.3.2 제2단계(業界慣行·業界基準의 明確化)

業界慣行이나 同業他社의 일반동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缺陷」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通常人으로서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業界慣行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同種製品의 안전성으로 이해하여 이것을 同種製品 전체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業界慣行, 業界基準, 同業他社의 動向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안전성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하여 둘 필요가 있다.

### 3.3.3 自社 安全基準의 策定

法令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業界慣行, 同業他社의 動向과 비교하여도 안전성면에서 하등의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도 「缺陷」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들면 타이어의 경우 성능, 구조, 특성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소비자가 법령에 정해진 安全基準이나 業界基準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타이어에 흠이 있으면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든가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면 어떠한 눈길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면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높은 안전성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缺陷」으

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法令基準이나 業界慣行보다 높은 수준으로 自社の 安全基準을 책정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안전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 ①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할 것.
- 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배려할 것.
- ③ 제품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것.

등을 검토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설계부서만의 所管으로 되어 있는 설계단계에서도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을 받아들이는 부서나 업무부서, 품질관리부서, 판매부서 등과 상호 협조하면서 경영판단으로서 自社の 安全基準을 책정하는 체제를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 3. 警告·取扱説明書作成時 주의할 점

경고 및 취급설명서는 소비자에게 위험성 및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경고 및 취급설명서도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不備하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缺陷」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 있어서는 경고 및 취급설명서의 不備는 가장 입증하기 쉬운 缺陷類型으로서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PL소송의 거의 절반이 이와같은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企業側으로서도 이 경고 및 취급설명서를 검토수정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 PL대책중에서 가장 먼저 이와 같은 경고 및 취급설명서를 검토수정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 「通常豫見되는 使用形態」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그 위험성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여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通常豫見되는 使用形態」란 메이커측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올바른 사용방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고 눈길 이 아닌 길을 장시간 주행한다」「연필심을 혀로 핥는다」「감기약과 진통제를 같이 복용한다」 등과 같은 사용방법은 메이커측에서 볼 때는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회통념상 이 정도의 사용방법이 용인된다면 이것 자체가 「缺陷」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사용할 경우에도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또한 그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고 및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품의 안전성은 제품 그 자체가 우선 안전하여야 하고 다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경고 및 취급설명서에 의한 메시지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순서로 검토되어야 하며,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고 및

취급설명서가 아니라 설계단계 등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缺陷」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法令으로 정한 사항, 業界慣行이나 同業他社가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재하여 두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設計段階의 配慮」와 같다.

#### 4. 製造物責任防禦對策

企業으로서 제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全力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損害를 최소한에 멈추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을 일반적으로 「製造物責任防禦對策(Product Liability Defense, PLD對策)」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중에는 리콜(recall) 실시, 보증서나 계약서의 정비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PL訴訟, 클레임에 대비한 대응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4.1 클레임 處理의 對策

일본에서는 제품에 의한 사고의 거의 전부가 실제로는 訴訟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교섭에 의한 和解나 示談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不滿을 받아 상대방과의 교섭에 의해 해결할 때 규정을 만들거나 책임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최초로 클레임을 접수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그 클레임에 대한 처리 결정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複數의 部署에서 클레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部署

間에 서로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일관된 企業對策을 수립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축적할 수 없게 된다. 결재권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으로 處理時에는 안전성을 입증하고 부당한 클레임이나 訴訟에 대항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단지 클레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설계부서, 기술부서, 제조부서, 판매부서, 품질관리부서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2 文書 및 記錄保存時 주의할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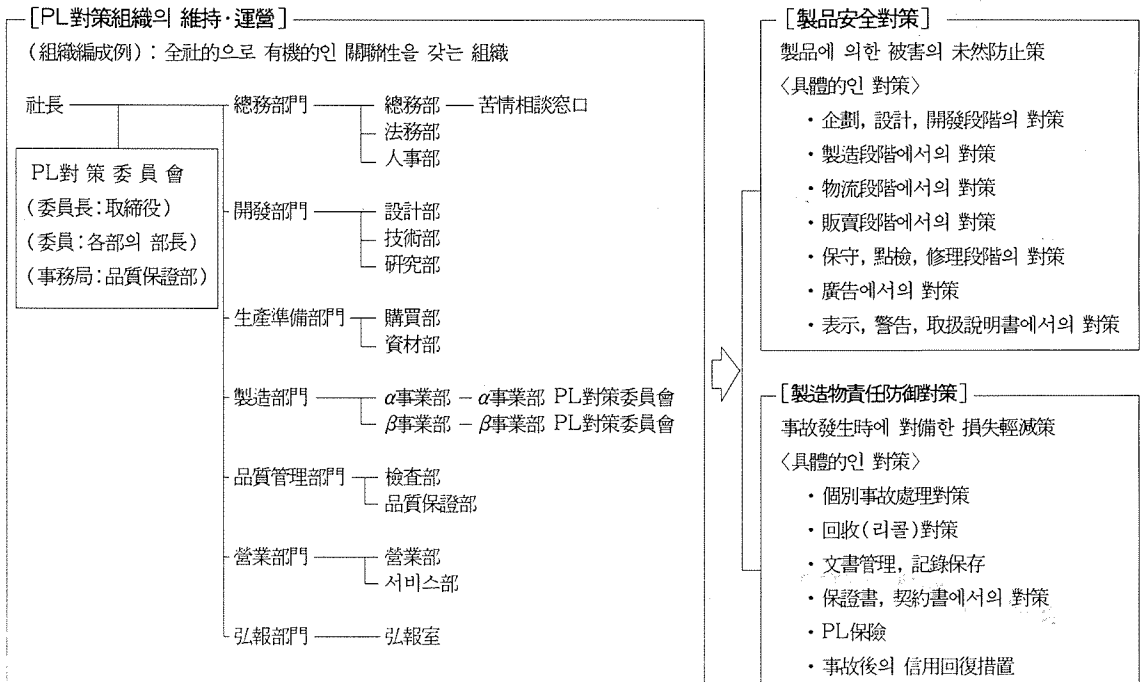
文書 및 記錄은 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메이커측이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또한 PL對策上 보존이 필요한 문서 및 기록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①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경위에 관한 문서 및 개발시 동업자의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 ②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조, 판매, 애프터서비스, 사고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실시경위
- ③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의 실시방법에 관한 문서
- ④ 제품의 출하년월일, 판매처, 유통경로 등

#### 4.3 PL保險의 利用

법률상의 책임을 저야 하는 경우의 일부를 설명하였으나, 여기에서 설명한 PL대책은



(그림 2) 綜合的인 PL對策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PL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PL이 企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PL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PL대책을 위한 체제구축의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예를들면 國際標準化機構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制定한 ISO 9000시리즈를 認證받아 品質管理體制를 구축하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PL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때로는 日常의 作業能率을 저하시켜 상품의 原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경영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를들면 클레임 불만은 클레임 불만을 받는 부서만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합적인 PL대책(그림 2 참조)을 파악한 뒤에 企業內部的의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PL對策組織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PL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6. 結 論

日本에서의 PL에 관한 문제는 法制度가 정비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는 할 수 없다. 公的인 原因究明機關 및 少額被害의 紛爭處理機關 設置, 企業에서의 PL對策 樹立·施行, 履行確保措置 등 검토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제품에 의한 피해를 가능한한 없애고, 또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被害者救濟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각 기업이 하여야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다른 내용들이 企業에서의 PL대책의 수립·시행 및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에 담겨 있는 意見은 筆者의 私見임을 밝혀 둔다.)

## 〈참 고 문 헌〉

- 1) 升田 純：「製造物責任法案の國會提出について」 NBL(No. 554), 商事法務研究會(1994), p.15
- 2) 升田 純：同上 p.18
- 3) 中村 弘：「アメリカ合衆國責任法における「欠陥」「概念」, 同志社商學, p.71
- 4) 松本恒雄：「アメリカにおける製造物責任」判例タイムズ(673), 判例タイムズ社(1988), p.90
- 5) 松本恒雄：同上 p.90
- 6) 朝見行弘：「製造物責任の現状と課題」別冊 NBL(No.24), 商事法務研究會(1992), p.36
- 7) 松本恒雄：「アメリカにおける製造物責任」判例タイムズ(673), 判例タイムズ社(1988), p.90

# 세계를 달린다. 우리의 타이어